

이 자료들은 지난 2월18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의 대응방향〉에 관한 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註〉

1. 논의의 배경

(1) 국제적인 환경보전 동향

- 1972년 스ток홀름에서 세계 최초로 국제적 차원의 UN환경선언이 채택된 이래,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 등 지구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범세계적으로 고조되기 시작하였음.

회의 개최를 계기로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논의와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음.

(2) 선진국의 환경보전 동향

- 美國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선진국들은 自國의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기준을 강화하거나 생산자에게 포장물 등 폐기물의 회수의무를 부과하는 형태의 일방적인 규제 조치를 빈번하게 활동하고 있음.
- 美國은 1990년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을 개정하여 자동차의 배기ガ스 배출기준과 연료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獨逸은 1991년부터 생산자 및 유통업자로 하여금 포장폐기물을 회수·처리토록 강제하는 「포장폐기물의 억제에 관한 법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폐기전제품의 경우 회수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음.

- 아울러 환경파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속력을 가지는 환경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이 속속 체결되고 있음.
- 현재까지 체결된 국제환경협약 수는 150여개에 달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냉전종식에 따른 동서간 갈등이 해소되면서 환경문제가 주요한 협력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1992년 6월 UN환경개발

(3)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동향

- 이와 같은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각종 규제조치들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시에는 강력한 무역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음. 국제환경협약의 경우 미가입국이나 불준수국가에 대한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최근에 체결된 협약일수록 무역규제의 강도는 더해지고 있으며, 개별국가에 의한 일방적조치들도 규제강화에 따른 자국산업의 상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의 대응방향

金峻漢

<산업연구원 산업환경실장>

鄭鎮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적인 경쟁력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품에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음.

- 더우기 지난해 12월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기준의 무역규제수단들이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 환경요인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크게 부각될 전망임. 예를 들면, 최근 美國은 환경보호를 위한 4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교역상대국에 대해서는 무역규제조치를 발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 조치들은 GATT의 기본이념인 자유 무역과 상충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게 되었으며 조치들간 무역 규제내용도 크게 상이한 바, 이에 대한 국제무역규범의 제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주의제로 한 새로운 多者間貿易協商(그린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Max Baucus 美상원의원은 1991년 10월 환경기준의 차이가 경쟁력 격차의 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相計關稅 부과가 불가피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간무역협상인 'Green Round'의 출범을 제의하였음. 또한 1993년 7월 美國은 UR타결 이후 공정경쟁, 기술, 투자, 노동분야와 함께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클린턴

라운드의 출범을 제의한 바 있음. 현재 이에 관한 논의가 美國과 EU간에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3월 개최될 G-7 각료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전망임.

2. 최근의 논의동향

- 과거에는 상호 독립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이 최근들어 兩政策間의 조정·통합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GATT, UN, OECD, ISO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1) GATT

- GATT는 개별국가 또는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기존의 국제무역질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복잡성, 입장 및 관점의 다양성, UR협상 타결의 긴급성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는 환경과 무역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음.
-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GATT내에서는 ① GATT이사회 ② 환경조치와 국제무역에 관한 작업반(환경무역작업반), ③ 국내금지제품과 기타 유해물질의 수출에 관한 작업반(유해물질수출작업반), ④ GATT사무국 등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GATT의 기본입장은 무역규제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되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조치들은
GATT의 기본이념인
자유무역과 상충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어
이에 대한
국제무역규범의 제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어야 하며 환경정책의 대안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임.

(2) OECD

- OECD는 환경과 무역문제에 관하여 가장 체계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1972년 "환경정책의 국제경제적 측면과 관련한 지침의 원칙"을 발표하면서 다음의 4大原則을 제시하였음.
 - ①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 환경보호에 필요한 규정이 설정되었을 경우 이의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함.
 - ② 조화원칙(Harmonization Principle) : 각국정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국가간 환경정책 및 규정의 조화를 위해 노력함.
 - ③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Nation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tion Principle) : 각국은 환

경조치 시행시 GATT의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원칙을 준수함.

- ④ 보상적수입부과금 및 수출환급 금지원칙(*Compensating Import Levies and Export Rebates Principle*) : 각국은 환경정책의 차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부과금이나 수출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1991년 1월에는 무역위원회와 환경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한 합동작업반이 구성되어 무역과 환경간의 조화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작성한 후 이를 1993년 6월 OECD각료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현재 분야별로 세부지침을 작성중에 있음.
- 현재 동작업반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침은 크게 6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는 ① 정책요강서 설 ② 국내환경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를 위한 지침 ③ 무역정책과 무역협정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의 최소화를 위한 지침 ④ 국제환경협정에 있어서 무역조치 활용을 위한 지침 ⑤ 환경목적을 위한 일방적 무역조치 사용에 관한 지침 ⑥ 환경정책의 조화를 통한 무역 및 환경목적 달성을 위한 지침 등임.

(3) UN

- UN내에서의 환경과 무역에 관한 논의는 1992년 6월 개최된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리우선언」

원칙 12 및 「의제 21(Agenda 21)」의 제2장에 반영되어 있음.

- 「리우선언」 원칙 12에는 “각국 환경악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함에 있어 도움이 되고 개방적인 국제경제 체제를 증진시키도록 협력하여야 하고, 환경적 목적을 위한 무역정책 수단은 국제무역에 대하여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적 조치나 위장된 제한을 포함해서는 아니 되고, 수입국의 관할지역 밖의 환경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방적 조치는 회피되어야 하며, 국경을 초월하거나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환경적 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의제 21」의 제2장을 통해 초국적, 지구적 환경문제를 규제하는 환경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에 기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환경과 무역간의 조화를 위한 다자간무역협상의 개최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원칙으로 무차별원칙, 최소규제원칙 등이 설정되어 있음. 다만 특정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역규제 조치의 시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함으로써 일방적 규제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음.

(4) ISO

- ISO는 오염물질함량을 단순반복적으로 측정분석하던 기존의 환경관리개념을 조직체내의 모든人的, 物的, 기술적 자원의 체계적인 환경활동과 능력을총체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환경영영 국제규격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산하에 설치된 기술위원회(ISO/TC 207)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영영 표준화대상은 7개 주제로 되어 있으며 각 주제별로 설치된 部會(SC)에서 표준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① SC1 : 조직체가 환경영영체제를 도입 채택하고자 할 때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을 규정한 환경영영체제에 대한 규격
- ② SC2 : 조직체의 환경영영체제와 산업활동에 대한 각종 감사절차와 감사자의 자격기준, 감사기관의 감사계획 설정에 대한 규격
- ③ SC3 : 환경친화적 상품에 대한 환경표시절차와 방법 및 표시내용의 확인방법에 대한 환경라벨링 규격
- ④ SC4 : 조직체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또는 환경목표 이행의 정도를 汚染因子別로 환경지표를 설정하고 定量的 비교 분석하는 환경성능 분석
- ⑤ SC5 : 상품의 제조에서 폐기기에 이

르기까지의 환경적 관련인자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라이프사이클 분석

⑥ SC6 : 환경에 대한 각종 용어의 정의와 수식의 규정에 대한 기본규격

3.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 수단

(1) 일반적 규제수단

- 환경문제는 대부분이 외부비경제(Negative Externality)에서 유발되고 있음. 이는 시장실패의 하나로서 외부비경제 부분이 내부화되어야만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세나 벌금의 부과, 환경기준의 설정 등 규제수단의 시행은 불가피함.

- 1988년 OECD가 조사한 바에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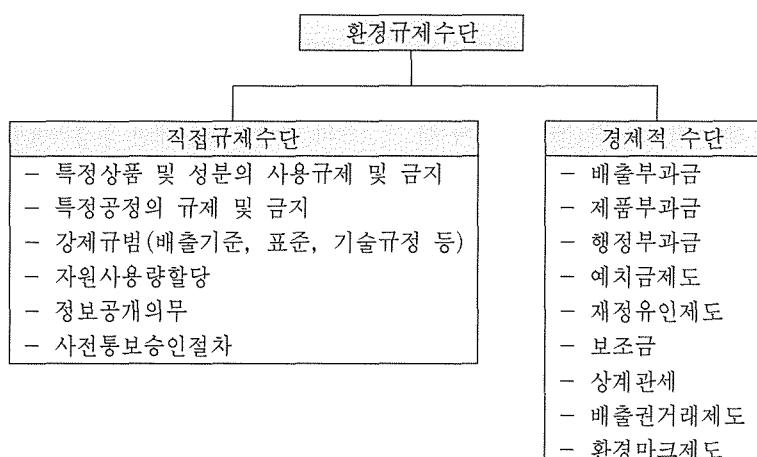
하면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환경규제수단은 153개에 달하는데 이들은 기능별로 크게 직접규제수단(Regulatory Instrument)과 경제적 수단(Economic Instrument)으로 구분됨.

- 그러나 국가간에 있어서는 경제적, 정치·사회적 요인에 따른 규제형태 및 정도의 차이로 내부화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기술수준 등 여타 생산여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생산비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비교우위에 영향을 주게 됨.
-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치들이 국내산업체(국내산품)와 외국업체(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되면 인위적인 비교우위 요인으로 작용하여 무역을 왜곡시키게 됨.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의
파급효과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2000년을 전후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GATT의 기본원칙인 무차별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에 입각하여 국내외 생산자들에게 동일한 형태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무역규제효과를 가지게 됨.
- 예로는 덴마크가 맥주 및 음료용기의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용기를 유리병에만 국한하였는데 이로써 덴마크에 음료나 맥주를 수출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수송비 추가부담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와 獨逸이 포장폐기물회수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수출업자들은 獨逸의 생산자에 비해 더 많은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음.

〈그림-1〉 환경규제수단의 기능별 분류



(2) 직접적 무역규제수단

- 직접적인 무역규제는 GATT의 규정이나 국제환경협약, 또는 다자 간협상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데

환경규제대상은 크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과 생산공정 두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규제수단으로서 특정품목의 수출입규제, 기술규제, 수량제한 및 상계관세 등이 사용되고 있음.

가. 특정품목에 대한 수출입 규제

-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특정물질이나 그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로서 대부분이 국제환경협약에 근거하고 있음.
- 몬트리올의정서에 의거 오존층파괴물질인 CFC등 41종의 특정물질의 사용량이 제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냉장고, 에어컨 등 이들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교역이 규제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생산공정에서 이들 물질이 사용된 제품도 규제될 예정임.
- 바젤협약에 의거 폭발성, 인화성, 중독성 등 1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 47종에 대해서는 국경간 이동이 규제되고 있으며,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를 통해 규제대상 동식물의 수출입이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완전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음.
- 나. 수량제한**
- 수량제한은 모두 GATT 20조의 일반적인 예외조항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①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b항) ②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g항) ③ 체약국단에 제출된 기준에 합치되는 정부간 상품협정 또는 체약국단에 직접 제출되어 부인되지 아니한 정부간 상품협정에 의한 의무에 따라 취한 조치(h항) 등임.

- 현재까지 16개국이 (b)항에, 9개국이 (g)항에, 그리고 10국이 (h)항에 의거 수량제한조치를 발동하였으며, 규제대상품목은 농산물과 화학물질이 대부분임.

다. 기술규제

- 기술규제는 東京라운드에서 채택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 *The Agreement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근거하고 있는데, 협정은 인간의 안전, 동식물의 건강, 그리고 환경을 이유로 하여 국제표준과 상이한 기술기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협정이 체결된 1980년부터 1990년까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하여 통보한 기술규정수는 모두 211건이며, 이를 부문별로 보면 유해물질부문 87건(41.2%), 대기오염부문 71건(33.6%), 소음방출부문 20건(9.4%) 등으로 되어 있음.
- 라. 상계관세**
- 상계관세는 환경규제가 엄격한 국가가 그렇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환경규제

수준의 격차에 따른 생산비의 차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임.

- 美國에서는 현재 환경기준이 업격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환경기준 격차에 따른 생산비의 차이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오염방지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음.

4. 과급효과와 대응방향

(1) 논의전망

-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 관련 다자간협상(Green Round)의 논의과정은 다음의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임.
 - 가.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
 - 동서냉전체제 붕괴이후의 새로운 세계질서가 지역적인 갈등의 원만한 해결과 국제적인 협력질서를 형성하는데 실패할 경우, 지역이기주의의 추구는 국지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범세계적인 환경규범의 작성과 Green Round의 타결은 상당기간동안 지연될 것임.
 - 반면 새로운 국제적 협력질서가 형성되면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과 피해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이 가능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범세계적인 인식이 확대될 경우, 정치권은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지구환경보전노력을 집중할 것이며 *Green Round*의 타결도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임.

나. 南北관계의 재정립

- 최근의 지구환경오염은 산업혁명 아래 선진국의 대량생산과 소비 행태에 기인하지만 향후의 경제 성장과 인구증가 등을 감안할 때 개도국은 가까운 시일내에 선진국의 오염물질배출규모를 능가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 필요로 하는 많은 자연자원, 유전종자, 열대림 등을 보유하고 있어 환경문제에 관하여는 선·후진국간의 타협이 필수적임.
- 따라서 범세계적인 환경규범의 작성을 위하여 선진국이 지구환경오염의 역사적인 책임을 인식하고 개도국이 경제성장을 통하여 빈곤을 탈피하도록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을 어떠한 형태로 지원할 것인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임.
- 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
- *Green Round*를 전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WTO에서의 협상은 GATT의 만장일치제에서 다수결제로 전환되고 강제집행권도 부여되어 있어 과거의 GATT협상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전될 전망임.
- WTO가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무역규범을 선진국 중심으로 작성

하여 회원국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실시하고 기타의 국가에게는 일정기간(2~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실천에 옮길 경우 *Green Round* 협상타결은 빠른 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음.

(2) 파급효과

-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관련 다자간협상은 문제의 광범위성과 다양성 및 국가간이해의 첨예한 대립 등을 감안할 때, 타결을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2000년을 전후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환경관련 무역규제에 따른 파급 효과는 경제발전단계와 산업구조 및 환경의 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며, 산업 및 업종별로도 크게 상이할 것임. *Green Round*의 결과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계기를 삼을 수 있음.
- 즉 파급효과는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관련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기간 동안 환경기준의 강화와 오염방지투자의 지출을 지연하고 환경오염의 악화로 인한 삶의 질의 하락과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감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장기적으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를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의 대응방안에는
환경기술의 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 활용,
환경외교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통한 삶의 질의 향상과 환경관련 무역규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오염방지투자의 지출을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임.

가. 오염방지투자지출의 증대

- 일반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은 경제활동, 즉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적으로 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됨. 따라서 생산공정 등의 개선을 위한 오염방지투자의 증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사전적인 오염물질의 배출감소는 생산요소의 생산성제고, 기업 및 제품의 수익성증대와 경쟁력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환경의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오염방지투자가 오염물질의 사후처리를 위하여 집중될 경우 국내환경개선에는 크게 기여할 것임. 그러나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인한 가격의 상승과 수요의 감소 등

으로 인한 경쟁력의 약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제지 및 펄프, 화학산업, 철강, 비철금속 등 생산공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부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반면, 2000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는 산업, 예를 들면 반도체, 전기 및 전자제품, 조립금속, 일반기계, 정밀화학 등 기술 및 지식집약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은 국제경쟁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음.

나. 오염방지비용 지출의 자연

- 오염방지투자 지출의 자연은 국내환경여건을 급속히 악화시킬 것임.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대와 환경관련 무역규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Green Round* 타결이 임박하여 단기간 동안의 막대한 오염방지투자의 지출은 산업의 경쟁력을 물론 거시경제운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다. 기타의 파급효과

- 환경규제의 강화는 환경보전 관련 기술에 대한 수요증대를 통하여 환경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킬 것임. 특히 UNCED의 결과로 ODA, GEF, IDA 10 및 국제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상당규모의 자금이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방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기술 및 오염방지산업은 국

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유망수출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수입개방화 정책과 UR 타결로 인하여 급속히 증대하고 있는 후발개도국으로부터의 저가공산품 및 농수산품은 국내관련산업의 존립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국내 환경오염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Green Round*의 타결로 인한 국제적인 환경규범의 제정은 이러한 수입제품에 대한 합법적인 규제수단을 제공해 줄 수 있음.
- 中國의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라 급속히 증대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은 우리나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임. 국내 환경보전을 위하여 中國의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Green Round*의 타결결과는 韓·中間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한 계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

(3) 대응방안

가. 환경기술의 개발과 확산

- 현재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수처리, 쓰레기 매립과 소각시설의 설치 및 이와 관련된 기술과 민간부문에서 기존의 생산공정에 추가적인 장치 등 공정을 설치함으로써, 이미 발생된 오염물질은 사후적

으로 처리하는 기술(소위 *End-of-Pipe* 또는 *Add-on* 기술 등)이 대부분임. 이러한 기술은 오염물질을 다른형태의 오염물질로 전환시키는 기술이 대부분으로 단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환경규범의 목표와도 상치됨.

-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환경기술은 불가피하게 발생된 오염물질을 재활용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과 생산공정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 즉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기업이윤의 극대화,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함.
- 환경기술의 개발을 위하여는 환경보전이라는 사회적 동기와 기업의 경제적 동기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정부의 환경규제와 시장원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함. 즉 정부의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통한 환경기술의 공급증대도 중요하지만, 오염자부담원칙과 경제적 유인제도를 중심으로 한 환경규제와 환경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환경기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어 시설투자

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향후 수년간은 기업이 추가적인 환경투자의 지출을 통하여 생산 공정의 개편과 오염물질배출감소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측면에서도 물가 불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임.

나. 환경보전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의 활용

- 경제적 유인제도는 기업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오염물질을 감소 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 방안인 환경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경비용을 내재화함으로써,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함.
- 경제적 유인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하여 ① 배출규제 기준은 정치·경제여건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조정되어져야 하며 ② 규제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부담은 규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방지비용보다 높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규제위반 기업을 적발 할 수 있는 감시망의 개선이 필요하고 ③ 제품가격에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반영함으로써 제품간의 상대가격의 차이를 증대시켜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구조로 개편하도록 노력해야 함.
- 이상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제적 유인제도, 즉 배출부과금제도, 폐기물 예치금제도,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제도등은 오염물질의 사전배출억제기능과 정부가 기대하는 환경투자재원조달기능을 모두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의 개선방향은 오염자 부담원칙과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하여 환경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개편되어져야 함.

다. 환경외교의 강화

- 2000년대를 전후하여 국내외에서는 안보, 경제, 환경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이들 문제들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특히 환경은 희귀재로 포함되어 보호, 절약되어져야 함에 따라 지역간, 국가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어 앞으로 환경관련 다자간, 쟁무간 국제협약은 급속히 증대할 것이며, 따라서 환경외교의 비중도 점차 증가할 것임.
-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관련 국제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환경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환경관련 국제협상에 참여하는 정부는 ① 무역자유화와 환경보전은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위하여 상호보완적인 역할이 수행되어져야 하며, ②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자간 협력을 통해 모색되어져야 하며 타국의 환경정책을 변경시키려는 일방적 무역제한조치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통상질서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으며, ③ 각국은 자국의 환경조건 및 경제·사회여건에 적합한 환경정책 및 기준을 설정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3국 또는 국제기구가 이의 변경을 강요할 수 없다는 등의 기본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관련 국제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환경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1) 최근 국내외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지난 30여년간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생활여건의 개선과 함께 환경피해로부터 보호받으려는 국민의 욕구는 집단행동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환경오염은 사회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거 우리나라의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온 원재료, 노동 및 에너지 집약적인 저가공, 저부가가치 산업체품이 수입개방화와 더불어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상실함에 따라 산업구조는 기술및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제품의 개발을 필요로 하며, 이는 환경적으로 청정산업의 육성을 의미함.
- 국제적으로는 지구온난화, 산성비, 오존층 파괴 등으로 인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됨에 따라, 최근 동서간의 긴장완화와 더불어 지구환경문제가 인류의 최우선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UN환경개발회의를 전후하여 체결된 환경관련 국제협약과 의정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무역규제를 위하여 환경라운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관련 국내외의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사회의 안정,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대외무역마찰의 사전대비를 통한 장기적인 경제사회발전을 위하여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2)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관련 다자간협상은 환경문제의

광범위성과 다양성 및 국가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협상타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국내파급효과는 2000년을 전후하여 발생될 것으로 판단됨.

- 2000년의 우리나라 경제·사회여건은 1인당 소득이 \$ 15,000을 상회함에 따라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며, 경제구조면에서도, 기술·지식집약적이며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청정산업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파급효과는 2000년까지 향후 5~7년동안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에 의하여 결정될 것임. 환경기준의 강화에 따른 오염방지비용의 증가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환경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시킬 경우 기업의 수익성증대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임.

- (3) 이러한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통한 장기 경제·사회발전전략과 순수한 의미의 「Green Round」의 방향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어져야 하며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됨.

- 만약 환경관련 무역규제에 관한 국제협상이 지연될 경우 선진국은 자국의 환경법에 의한 일방적인 무역규제를 강화할 것이며, 주요대상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발개도국이 될 가능성이 높음.◆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통한 장기 경제·사회발전전략과
순수한 의미의
「Green Round」의 방향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어져야 하며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